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80

발의연월일: 2021. 1. 11.

발 의 자:김성주·김윤덕·장철민

최혜영 • 이규민 • 임호선

이수진 · 김철민 · 김민철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르면, 질병관리청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두고 있음.

그런데,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, 그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,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염병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·대학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·

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지원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·분석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험·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6(감염병 치료제·백신
	개발지원) ① 질병관리청장은
	<u>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</u>
	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
	및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
	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
	료제・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
	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
	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・백
	<u>신</u> 개발에 관한 시험·분석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③ 제2항에 따라 시험・분석을
	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
	<u>내야 한다.</u>